

비용의 산정기준(제81조 관련)

법 제75조에 따라 융합혁신지원단의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이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각 기관이 해당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
구분	금액
가. 인건비	기술지도·자문·기술정보의 제공·평가결과 분석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
나. 재료비	소재·부품·장비기술 지원활동 과정 및 신뢰성 향상 지원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
다. 감가상각비	장비별 법정 내용연수(耐用年數)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률을 100%로 하여 정액법에 따라 감가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비용
라. 시설유지비	장비 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, 장비 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, 장비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·수도료 및 그 밖의 시설유지비
마. 그 밖의 비용	그 밖에 소재·부품·장비기술 지원 및 신뢰성 향상 지원을 위해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 수집비용, 현장출장비, 시험대상 소재·부품·장비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

비고

1. 위 표 가목에 따른 인건비는 필요인력의 수 및 인건비의 단가를 지원 건별로 그 지원을 받은 기업과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또는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.
2. 위 표 마목에 따른 현장출장비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소재·부품·장비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.